제 2019-163호

태국

저작권법을 남용한 사기 사건 발생

방콕사무소

현황

○ 최근 태국에서 15세 소녀에게 저작권이 설정된 만화 캐릭터의 끄라통(Krathong)을 주문한 후,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함

※ 끄라통은 연꽃 모양으로 만든 배로, 태국에서는 “러이 끄라통(Loi Krathong)” 축제 때 끄라통을 강물에 띄우며 송구영신을 빌고 있음

주요 내용

- 지난 11월 1일, 온라인으로 일본 유명 만화 캐릭터의 사진을 이용한 끄라통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은 15세 소녀가, 제작한 끄라통을 배달하러 갔을 때 경찰을 대동한 저작권자 대리인에게 붙잡혀 5만 바트(한화 약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협상을 통해 벌금 5천 바트(한화 약 20만 원)를 내고 풀려남
- 경찰 조서 작성 시 소녀에게 끄라통을 주문한 사람은 바로 저작권 대리인이었고, 자신에게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특정 끄라통을 주문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오히려 경찰은 법률에 따라 집행했다며,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먼저 심사숙고하라는 당부의 말을 전함
- 학비에 보태고자 벌이에 나선 어린 소녀를 함정에 빠트려 돈을 갈취한 이 사건은 당연히 대중의 공분을 샀고, 이 사건이 알려지자 비슷한 내용으로 금전을 갈취당한 많은 사람이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
- 확인 결과, 일본 만화 캐릭터의 저작권자는 태국 내 대리인들에게 경찰과 공조한 수사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저작권이 설정된 캐릭터와 소녀가 사용한 그림은 닮지도 않았다고 밝힘
-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은 소녀의 끄라통에 사용된 캐릭터가 진본과 닮았다 하더라도 법적 조치 이전에 경고를 먼저 받았어야 한다고 밝힘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1789324#cxrecs_s